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11. 24 선고 2020가단21288, 2019가단20852(병합) 판결

[배당이의 ·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성 담당변호사 남준영

피 고 1. B

2. C

3. D

4. E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섭

5. F

변 론 종 결 2021. 11. 10.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1.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G, H(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6.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9,317,609원을 삭제하고, 위 삭제된 금액 9,317,609원을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2.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G, H(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6.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9,317,608원을 삭제하고, 위 삭제된 금액 9,317,608원을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3. 원고의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 2의 가항 및 피고 D와 I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E과 I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G, H(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6.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9,317,609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9,317,609원,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2,919,493원,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7,420,000원, 4,739,884원,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7,280,000원, 1,415,954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9,779,835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18. 10. 1. 당시 I의 적극재산

I은 2018. 10.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제천시 J 전 2,311㎡, 제천시 K 전 14㎡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F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등기

1) 피고 F은 I과 사이에, 피고 F이 2014. 10. 24.부터 2015. 12. 22.까지 총 38,000,000원을 I에게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F은 2018. 8.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청구금액 38,00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 C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근저당권 설정

1) 피고 B은 2018. 10. 1. I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I,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은 2018. 10. 1. I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I,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E, D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근저당권 설정

1) 피고 D는 2018. 10. 1. I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D, 채무자 I,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E은 2018. 10. 1. I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E, 채무자 I,

채권최고액 2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부동산강제경매절차와 배당표의 작성

1) I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제천시 J 전 2,311㎡, 제천시 K 전 14㎡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G, H(병합)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위 법원은 2020. 6. 15. 열린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27,981,535원을 피고들 등에게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이 유	배당액(원)
1	**피고 D**	최우선변제임금채권	**7,420,000**
1	**피고 E**	최우선변제임금채권	**7,280,000**
1	제천시	당해세	116,280
2	L조합	근저당권자	20,322,669
2	L조합	근저당권자	60,715,031
2	제천시	교부권자	23,383
3	국민건강보험 제천단양지사	교부권자	2,910,934
3	국민건강보험 제천단양지사	교부권자	1,466,004
3	**피고 C**	근저당권자	**9,317,608**
3	**피고 B**	근저당권자	**9,317,609**
3	충북신용보증재단	가압류권자	16,686
3	**피고 F**	가압류권자	**2,919,493**
4	**피고 D**	근저당권자	**4,739,884**
4	**피고 E**	근저당권자	**1,415,954**
합 계			127,981,535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20. 6. 19. 이 사건 소(2020가단21288호)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병합사건 갑 제2, 6 내지 8호증, 본소 갑 제3, 8호증, 을마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 C을 상대로, 위 피고들과 I 사이에 2018. 10. 1.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 C에 대한 각 배당액 9,317,608원, 9,317,609원을 각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할 것을 구한다.

그리고 피고 B, C이 2020. 8. 12.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피고 B, C에 대한 각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다만, 수인의 채권자들이 각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당액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들에게 각자 배당할 것을 구하는 경우, 위 각 소송이 병행심리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판결에서 다른 배당절차를 밟아 배당표를 다시 만들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 참조). 원고뿐 아니라 충북신용보증재단도 위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가단21264호)를 제기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사건을 모순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에 따라 배당법원으로 하여금 이 판결과 위 사건에 대한 판결이 모두 확정된 후 해당 부분에 관하여 배당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9,317,608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9,317,609원을 각 삭제하고, 위 금액을 원고 및 다른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들 사이에서 각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3.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1) 사해행위취소 주장

원고는 I에 대하여 총 122,779,835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I은 2018. 10. 1.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D, E과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D, E이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4,739,884원, 1,415,954원은 삭제되어야 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2) 통정허위표시 무효주장

피고 D, E이 I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D, E이 임금채권자로서 배당받은 7,420,000원, 7,280,000원과 임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4,739,8884원, 1,415,954원은 모두 삭제되어야 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인정 여부

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I에게 2018. 3. 16.부터 2018. 8. 15.까지 총 45,938,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아 2018. 10. 1. 기준 잔여 대여금채권은 29,779,835원인 인정된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 외에도 I에 대하여 93,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I에게 2018. 4. 25. 40,081,709원, 2018. 4. 26. 5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I에 대하여 93,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② 위 송금액에 관하여 원고와 I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명시적인 처분문서 등이 없다.

③ 원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변제기일, 이자 등의 대여 조건을 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도 아니하였다.

④ 원고는 2018. 11.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카단394호)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는 앞서

본 29,779,835원의 대여금채권이다.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I에 대하여 2018. 4. 말경 93,000,000원을 대여하였다면, 원고가 가압류신청시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에서 제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29,779,835원에 한정된다.

2) 사해행위 인정여부

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I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가 I의 유일한 재산임을 전제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I은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이 사건 건물, 제천시 J 전 2,311㎡, 제천시 K 전 14㎡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유일한 재산'이 아니었다.

게다가 앞서 본 증거, 병합사건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당시 I은 채무초과 상태도 아니었다(원고는 아래 표에 기재된 소극재산 외에도 I이 원고에 대하여 93,000,000원의 대여금채무, L조합에 대하여 80,000,000원의 대출금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나. 1)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93,000,000원의 대여금채무는 인정할 수 없고, I이 L조합에 대하여 8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종류	가액	종류	금액
이 사건 토지	247,155,000원	원고에 대한 채무	29,779,835원
이 사건 건물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	13,974,121원
제천시 J 전 2,311㎡		피고 F에 대한 채무	38,000,000원
제천시 K 전 14㎡		피고 D에 대한 채무	80,440,000원
		피고 E에 대한 채무	27,580,000원
합계	247,155,000원	합계	189,773,956원

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I과 피고 E, D 사이에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피고 D, E과 I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배당에 이의하였으므로,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러나 병합사건 을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D, E은 I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제시하는 사정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 F이 I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F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 을마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별도로 제출한 바 없는 점, ② 원고는 I에게 2014. 10. 14. 지급된 20,000,000원은 피고 F이 아니라 M의 계좌에서 송금되었음을 이유로, 위 돈은 피고 F이 I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M은 'M은 피고 F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I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오히려 피고 F은 I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I은 F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점(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5878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D, E, F에 대한 각 청구, 피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은석

별지

1. 제천시 N
   [도로명주소] 제천시 O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아스팔트싱그)
   단층 단독주택
   1층 96.12㎡
   지하1층 78.4㎡

2. 제천시 N 대 660㎡.끝.